기금관리 규정

(제 2차 개정 1999. 12. 17.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금의 설치) 기금은 그 목적, 용도 및 설치(모금)기간을 정하여 이사회 승인 후 특별회계로 설치, 운용한다. (신설 21. 2. 4.)
- 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출연금 및 성금
 - 2. (삭제 99. 12. 17.)
 - 3.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
 - 4. 기 타
- 제4조(기금의 목적) 법인 정관 사업에 의거, 공익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모금한다. (개정 99. 6. 22.)
- 제5조(기금의 운용 및 관리) 사무총장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설치 운영) ① 기금관리,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헌장 제39조, 제41조, 제42조를 준용한다.
- 제7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
 - 1. 스카우트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
 - 2. 야영장 및 회관의 관리, 운영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
 - 3. 기타 정관 사업에 의거한 공익사업 (개정 99. 6. 22.)
- 제8조(기금의 수입) 기금은 성금, 출연금 및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.
- 제9조(기금의 지출) 기금의 지출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지출에 한정하며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결손 처리) 기금 운용 중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 이익금 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.

제11조(기금의 결산) 기금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